

# 朝鮮朝 保存圖書館의 始源과 發展

A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Deposit Libraries  
in the Chosun Dynasty

裴賢淑(Pae, Hyon-Suk)\*

## ◁ 목 차 ▷

1. 緒言	5.1.1 實錄의 奉安
2. 保存圖書館의 概念	5.1.2 史閣의 奉審과 守護
3. 保存圖書館의 始源	5.2 朝鮮實錄의 保護
3.1 高麗實錄의 保存活動	5.3 朝鮮實錄의 復元
3.2 高麗實錄의 保護活動	5.3.1 實錄의 復元
4. 朝鮮朝 外史庫의 設置	5.3.2 實錄의 修補
5.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外史庫	6. 結言
5.1 朝鮮實錄의 保存	<參考文獻>

## < 초 록 >

요즈음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保存圖書館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료를 보존할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원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데, 資料保存이란 '保存', '保護', '復原'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열람이 주목적이 아닌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은 이미 高麗朝에 비롯되었고, 朝鮮朝에는 外史庫에 계승되었다.

본고는 조선조 外史庫에 대하여 保存圖書館으로서 實錄의 '保存', '保護', '復原' 활동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조선 조정은 실록의 永久保存을 위해 지방에 外史庫를 설치하여 실록이 간행되면 분장하여 화재, 전쟁, 천재지변 등의 災難에 對備하였다. 이를 위해 規定을 정해서 參奉이 관리하고 守護軍이 수직하게 하였다. 保護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曝曬하고 點檢해서 報告書를 작성하였으니 곧 형지안이다. 復原도 한 바 임진왜란으로 손상된 실록 전체를 複印하기도 하였고, 부분적으로 필사해서 補完한 바도 있고, 4차례나 修補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세심한 노력으로 실록은 600년의 긴 세월을 지탱해올 수 있었다.

要語 : 保存圖書館, 外史庫, 記錄保存

\* 啓明文化大學 教授(hspae@km-c.ac.kr)

접수일: 200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Nowadays we witness the problem of limited space to keep the books. Sp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environment of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To solve space problem, we have to establish many levels of deposit library. The deposit library functions to preserve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is defined as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Deposit library, to preserve materials and not for circulation, was established in the Korea Dynasty, and was succeeded by the branch libraries for Historical Deposit Library (史庫) and branch library of Kanghwa magistracy of Kyujang-gak(奎章閣) in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ivities of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reproduction of the branch libraries for Historical Deposit Library. After reprinting the Chronological Annals(實錄) in 1605, the branch libraries were established to prevent a risk from fire, warfare, and unusual change of weather. The collections were safeguarded by the regulations for guarding the Historical Deposit Libraries. The collections were preserved, conserved, reproduced and repaired by strict regulations. Through these endeavor, the Chronological Annals endured for those 600 years.

Keywords: Deposit Library, Oe-sago, Preservation.



## 1. 緒言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광복 후 장서의 확충에만 급급하였다. 결과로 20세기 말에는 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서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적을 보관할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규모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에만 주력했으므로 자료보존문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도서관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보존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다. 이는 國立中央圖書館이 2000년 8월 資料保存館을 완공하고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옮겨 보관함으로써 촉진되었다. 이후 각급도서관은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보존관을 설립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sup>1)</sup> 이는 우리나라에 이미 고려시대부터 보존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존도서관의 기원은 고려 고종 14(1227)년에 海印寺에 설치한 外史庫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으니, 대략 8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고려의 보존도서관인 史庫는 조선시대에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또 다른 보존도서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니<sup>2)</sup> 곧 奎章閣의 外閣인 江都의 奎章外閣이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보존도서관은 지방에 설치된 外史庫이다. 춘추관의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부분 실록을 수장한 外史庫도 열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존만 할 목적으로 외방에 설치한 保存圖書館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존도서관의 목적은 오늘날의 보존도서관과는 설치 목적, 운영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보존도서관으로서의 외사고, 그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강미희,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2003), p.9.

2) 裴賢淑,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 3). p.97-118.

## 2. 保存圖書館의 概念

우리나라에서의 보존도서관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어 조선에 계승, 발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도서관의 보존이란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에서 공포한 『圖書館 資料保存 및 保護原則』에는 ① 保存은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書庫, 施設, 人事, 政策, 技術, 方法 등의 管理와 財政問題를 포함하고, ② 保護는 도서관 자료를 燬損, 損傷, 腐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特定政策 및 實務 외에도 전문가가 개발한 방법 및 기술까지를 의미하며, ③ 復原은 자료를 修理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가의 技術과 判斷을 의미한다<sup>3)</sup>고 정의되어 있다. 즉 자료보존을 ‘保存’, ‘保護’, ‘復原’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존은 자료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방지하거나, 손상된 자료의 지적 내용을 보전하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호는 자료의 원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정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존보다는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보호는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기법과 절차를 의미하고 보존은 보호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원자료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즉 보관과 설비의 정비, 더 나아가 직원의 전문성과 정책, 기술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sup>4)</sup>

기록의 보존은 刻書時代부터 비롯되었다. 나아가 도서관이 성립되면서 자료를 수장하고, 이용을 위해 조직하고, 그 장서를 조직적으로 보존하게 되었다. 동양에서는 이미 漢代부터 복본을 구비하여 內禁의 장서와 外官의 장서라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보존은 언제나 도서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보존도 전문적인 업무분야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즉 도서관 장서의 축

3) 방준필, “자료보존과 매체변환,” 자료보존과정(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2), p.93에서 재인용.

4)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p.9.

적, 보호 그리고 보수작업을 정식으로 보존이란 중요업무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서관자료의 보존이 전문성을 띠게 되자 여러 원칙이 개발되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입수하면 영구적으로 보존한다<sup>5)</sup>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서양에서의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 영국 Blade의 『The Enemies of Books』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20세기 들어 보존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1966년 11월 플로렌스를 덮친 대홍수로 대부분의 자료가 훼손되자 이태리 국립도서관이 이를 수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때이다.<sup>7)</sup>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손상된 자료의 복원, 자료의 보존 원칙과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그 연구의 결과로 각국 도서관은 자료의 훼손이 심해 시급히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할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1973년 미국 의회도서관도 1,700만권의 장서 가운데 34%인 600만권이 사용 불가능 또는 보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영국 국립도서관도 자료상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850년 이전 자료의 약 14%는 특수한 보존처리를 해야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은 자료의 훼손, 변질, 유실은 자료보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자료보존에 대한 무관심은 인류의 문화적, 역사적, 지적 유산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플로렌스 대홍수 이후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훼손된 자료의 복원, 손상과 훼손의 예방계획 및 자료보존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자료보존전문가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국고로 ‘大量脫酸處理法’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보호기술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의회도서관이 광디스크 기술을 활용하여 시디롬에 디지털 정보를 축적한 것이다. 또 미국정부가 지원하여 산화된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고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는 다양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5) Michéle Valerie Cloonan저, 方俊弼역, 「자료의 보존」, 『도서관』, v.49 no.3(1994. 가을), p.86.

6) 한상완,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1), p.6.

7) Paul N. Banks, “Preservation of library material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3(N.Y. : Marcel Dekker, 1978), p.181.

미국은 1970년 의회도서관에 자료보존국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보존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의회도서관과 1974년에 출범한 연구도서관그룹(RLG)은 공동보존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한 협동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로서 大學附設保存所(Institutional Storage), 單純協力保存所(Cooperative Storage), 共同協力保存所(Collaborative Storage), 地域共同保存所(Regional Library Center), 國家資料共同保存所(Repository Libraries) 등 여러 유형의 보존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보존도서관의 기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용도가 낮은 자료라도 자료 자체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 이용이 예상되는 자료를 보존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둘째, 잠정적으로 폐기된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여 회원도서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봉사영역을 넓히는 기능, 셋째, 이용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를 분리하여 낮은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sup>8)</sup> 넷째는 국가 문헌을 별도로 관리하여 戰時 또는 非常時, 天災地變 등 災害에 대비하여 일시에 소멸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sup>9)</sup>이 있다.

현대에는 도서관자료 중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가 함께 배열되어 있으면 서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의 보존도서관은 오늘날의 보존도서관과는 설립 목적도 다르고, 운영방법도 다르다고 하겠다. 그 목적은 중요사책을 자손 만대에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唯一本이나 複本을 별도로 모아 화재나 전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외사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존도서관의 발달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8) 洪英義, 『保存圖書館에 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제20권 제5호(1983. 7), p.15-16.

9) 梁泰鎮, 『保存圖書館 設置의 必要性』, 『圖書館報』 제7호(서울특별시립중로도서관, 1978), p.42.

### 3. 保存圖書館의 始源

#### 3.1 高麗實錄의 保存活動

고려시대에도 장서를 하였으니 국가적인 장서로는 秘閣, 寶文閣, 重光殿 등등을 들 수 있고, 開國寺, 興王寺 등 거대한 사찰에는 大藏經을 수장한 大藏殿을 설치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엄중하게 도서를 보존한 것은 『高麗實錄』일 것이다. 고려시대 도서의 보존활동도 보존, 보호, 복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보존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서적을 보존한 서고의 설치, 그 서고와 수장된 서적의 관리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實錄을 수장한 史庫와 製作部數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없다. 처음에는 사적들을 궁궐 내에 수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종 2(1011)년 거란병이 개경을 함락시키고 궁궐을 불태웠을 때 궁내의 사적이 소진되어 『七代事蹟』 편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당시 궁내에 수장되었던 사적의 부분이 다른 곳에 수장되어 있었다면 이들 사적의 복본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七代事蹟』을 편찬한 이후 이와 연계하여 역대의 실록이 편찬된 바 이들 실록은 궁내 史館에 수장되어 있었다. 인종 4(1126)년 李資謙이 왕권에 도전하여 난을 일으키고 궁을 불태웠을 때 直史官이었던 金守雌가 수직하던 중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國史를 등에 지고 山呼亭 북쪽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음으로써 전승될 수 있었다. 여기서의 국사는 실록을 포함한 사서를 말한다. 이에 의종년간 吏部에서 金守雌에게 吏部侍郎翰林侍讀學士知制誥를 追贈하였는데,<sup>11)</sup> 이는 唐代에 安祿山の 난을 통해서도 국사를 보존시킨 韋述의 예를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인종년간까지 국사는 궁내 사관에 수장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즉각 실록의 부분을 제작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부분의 제작은 고종년간 『明宗實錄』을 편찬할 때 비롯된다. 고종 14(1227)년 9월에 『明宗實錄』 2부를

10) 高麗史, 影印本(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 권95. 책3. p.126上. 黃周亮.

11) 高麗史, 권98. 책3. p.190上.

제작하여 1부는 史館에, 부분은 海印寺에 수장하였다.<sup>12)</sup> 이때 해인사에 외사고를 설치한 것은 북쪽의 몽고족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침으로 말미암은 국사 상실에 대한 불안감에서 부분을 작성한 것이다.

외사고는 해인사에 두었는데 고려가 송불을 국시로 하였다고 하나, 지방관서에 서도 수장할 수 있는 국사를 굳이 사찰에 수장한 이유는 당시의 사찰은 대량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란의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사찰 뿐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대량의 서적과 불경을 수장했던 사찰은 44개소, 大藏殿을 건립했던 사찰만도 13개소가 확인되고 있다.<sup>13)</sup> 이런 사정이 고려에 대규모의 寺刹文庫가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여러 사찰 중에서 해인사에는 실록을 수장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고종 이후에는 실록이 제작되면 경사고와 해인사사고에 실록을 수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종 41(1254)년 몽고군이 합천의 丹溪에까지 침범하였으므로 이 실록은 彰善縣으로 옮겨갔고, 원종 10(1269)년 왜구의 침입을 예상하여 珍島로 소개되었다.<sup>14)</sup> 이 실록은 해인사실록을 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哈丹의 침입으로 충렬왕 16(1290)년에 강화도로 옮겨 수장하였다가,<sup>15)</sup> 충렬왕 18(1292)년에는 禪源寺를 거쳐 개경으로 환장하였다.<sup>16)</sup> 이 실록은 해인사실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공민왕 11(1362)년에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 궁궐의 사고는 파괴되고 실록은 露地에 산재되어 郭樞를 개성 사관에 보내 해인사로 옮기게 하였다.<sup>17)</sup>

우왕 5(1379)년에는 왜구가 합천의 丹溪, 冶爐와 居昌에 출몰하였으므로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는 실록과 서적을 善州 得益寺로 옮겨 수장시켰다.<sup>18)</sup> 우왕 6(1380)년

12) 高麗史, 권22. 책1. p.453.

13) 裴賢淑, 「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奎章閣』6(1982.12), p.45-61.

14) 高麗史, 권26. 책1. p.528.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서울 : 東國文化社, 4291), 권30. p.515. 晋州牧.

15) 高麗史, 권30. 책1. p.624.

16) 高麗史, 권30. 책1. p.627下.

17) 高麗史, 권40. 책1. p.797과 권112. 책3. p.451. 白文寶.

18) 高麗史, 권134. 책3. p.889.

에는 왜구가 상주와 선산까지 미치자 다시 甫州 普門寺로 옮겼고, 우왕 7(1381)년에는 왜구가 寧海에 침입하여 안동이 위태롭게 되자 忠州 開天寺로 옮겨 수장하였다.<sup>19)</sup> 우왕 9(1383)년에는 왜구가 단양, 제천, 영주 등지에 침입하여 竹州 七長寺로 옮겼고,<sup>20)</sup> 공양왕 2(1390)년에는 왜구가 음성, 안성, 괴산에 이르자 다시 忠州로 옮겨 수장시켰다.<sup>21)</sup> 이와 같이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소개하는 등 실록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였다.

### 3.2 高麗實錄의 保護活動

또한 실록을 훼손, 손상,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활동도 하였다. 이는 곧 실록의 영구전승을 위해 포쇄하고 점검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충렬왕 때 直史官 秋適이 해인사 수장의 실록을 포쇄한 것이다.<sup>22)</sup> 또한 공민왕 11(1362)년 홍건적의 난으로 산일된 實錄史藁 3櫃 10餘筍를 留都監察司가 포쇄할 것을 상소한 기록이 있고,<sup>23)</sup> 우왕 9(1383)년 수찬 裴仲員이 竹州 七長寺의 실록을 포쇄한 기록도 있다.<sup>24)</sup> 이 3회의 기록만으로는 정기적인 포쇄와 점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이지만 해인사의 실록을 3년에 한번 포쇄했다는 기록<sup>25)</sup>이 있으므로 3년마다 포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쇄한 후 고려시대에도 보고서 작성하였으나 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고려시대에 작성된 『書籍置簿』'<sup>26)</sup>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實錄曝曬形止案』을 의미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p.488. 善山都護府.

19) 高麗史, 권134. 책3. p.900.

20) 高麗史, 권135. 책3. p.90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p.148. 竹山縣.

21) 高麗史, 권45. 책1. p.887.

22) 徐居正, 東文選. 木版本[中宗年間], 권6. p.69.

23) 高麗史, 권40. 책1. p.796.

24) 權近, 陽村集. 木版本[顯宗 13], 권16. 장2-3.

25) 增補文獻備考, 影印本(서울 : 東國文化社, 4292), 권221. 職官考. 장18表.

26) 書籍置簿가 形止案을 의미하는 경우는 조선 현종 1(1660)년 禮訟이 있었을 때 춘추관에 수장되어 있는 『江華實錄置簿』를 본 즉, 예종과 명종의 실록이 완질이 아니어서 적상산사고에 파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書籍置簿』는 조선초까지 전래되었고 그 작성관례도 조선에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을 보존하고 보호한 고려조의 이러한 전통은 그대로 조선에 계승된다. 태종 4(1404)년 고사를 준수하여 충주사고에 수장되어 있던 『高麗實錄』을 포쇄하였고,<sup>27)</sup> 태종 16(1416)년 同副代言 李明德이 구례에 따라 사고수장 서책을 포쇄하였다.<sup>28)</sup> 세종 3(1421)년 왕이 『忠州史庫書籍簿』를 열람하고 필요한 책을 奉敎 鄭周生을 파견하여 가져오게 하였으며,<sup>29)</sup> 세종 22(1440)년 4월에는 『高麗史』를 찬수하기 위해 충주 개천사에 수장된 고려조의 실록을 경중으로 수송하였다.<sup>30)</sup> 여기에서 ‘고사를 준수하여’ 또는 ‘구례에 따라’ 포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아 이는 고려시대로부터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실록을 편찬, 보관하고, 防濕과 防蟲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疏開하였고, 포쇄와 점검을 하여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한 보존과 보호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록을 보관한 史閣의 관리와 수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평소에도 방습과 방충에 대한 관리와 재난에 대비하여 소개를 하였으니 사각도 관리하고 수호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공민왕 11(1362)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 궁궐의 사고는 파괴되고 실록은 露地에 산재되어 郭樞를 보내서 수습한 실록을 해인사로 이장하였으나 이후에도 거듭되는 전란으로 소개한 기록만 나타나고 손상된 실록의 수리와 복원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종 2(1011)년 거란병의 침입으로 사적이 소실되자 『七代事蹟』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도서의 복원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도 서적의 보호, 보존, 복원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 초록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서적치부는 곧 형지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서적부도 형지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顯宗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1972), 권2. 1년 3월 丙子. 책36. p.240下左.>

27) 徐居正, 東文選, 권93. 장.1-2.

28) 太宗實錄, 권32. 16년 7월 庚戌. 책2. p.129上左.

29) 世宗實錄, 권11. 3년 1월 庚午. 책2. p.420上右.

3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p.237. 忠州牧.

조선 세종년간 경중으로 수송해왔던 『高麗實錄』은 『高麗史』가 편찬된 후에는 관계기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마도 『高麗史』가 편찬된 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로 춘추관 사고나 충주사고에 수장되어 있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이 아닐까하고 추정한다.

#### 4. 朝鮮朝 外史庫의 設置

조선은 전조 『高麗實錄』을 보존하면서 또 조선의 실록을 편찬하여 보존하였다. 고려로부터 전승된 실록 편찬제도의 대강은 조선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실록이 수장된 춘추관 사고와 지방의 사고 즉 외사고는 그 설치 목적이 상시 열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후대에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열람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오로지 보존, 보호와 복원활동만 이루어졌다. 실록을 보관한 조선의 사고제도는 임진왜란을 분수령으로 전기와 후기의 양상이 다르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사초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초를 보관할 사고는 국초부터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조선의 사고는 『太祖實錄』이 완성된 태종 13(1413)년 3월부터 비롯된다.<sup>31)</sup> 이때의 기록에 실록봉안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경중 춘추관사고에 수장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太祖實錄』은 이후 몇 차례 수정되면서 세종년간에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사적은 널리 분장해야 병화를 통해서도 손실이 적을 수가 있음을 인식한 바 실록을 분장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세종 13(1413)년이였다. 3월에 『太宗實錄』이 완성되고 난 후 4월에서야 외방사고 수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에는 춘추관사고본 외 정본 1건만을 필사하고 檢閱 金文起를 보내어 선초의 삼조 실록을 모두 충주사고에 봉안하도록 하였다.<sup>32)</sup> 이 충주사고가 조선 外史庫의 시초가 된다.

이어 세종 21(1439)년 사헌부에서 실록 복본의 제작과 분장을 상소함으로써 외사

31) 太宗實錄, 권25. 책1. p.667上左. 13년 3월 辛丑.

32) 世宗實錄, 권52. 책3. p.313上右. 13년 4월 己未.

고 증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종의 실록, 전조사적, 경서, 제자서, 경제, 조례와 헌장의 복본을 만들어서 각도명산에 분장하고, 해를 걸러 포쇄하면 불우의 변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sup>33)</sup> 춘추관에서도 星州와 全州에 사고를 건립하여 전적을 수장할 것을 계청하였다.<sup>34)</sup> 이들 외사고가 건립되자 세종 27(1445)년부터 복본을 필사하여 성주와 전주에도 봉안하기 시작하였다.<sup>35)</sup> 따라서 조선 전기의 사고는 궁내의 춘추관 사고와 세 곳의 외사고로 확립된다.

그러나 이때의 사고는 산중에 건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성내에 건립된 것이다. 충주사고는 성내에 따로 신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客舍의 서쪽,<sup>36)</sup> 客館의 동남<sup>37)</sup>이라는 기록이 있어 정확한 위치의 비정은 어렵다. 그런데 객관의 서쪽에 있었다는 기록은 당대의 기록이고, 동남에 있었다는 기록은 훨씬 후대의 기록이다. 전자가 더 신빙성이 있지만 혹시 후에 이진된 것인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방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기록을 통해 성내 객관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충주 사고도 임진왜란을 만나 실록과 함께 사각이 전소되었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주에는 사각을 건립하지 못해 처음에는 실록을 전주부 내의 崇義寺에 봉안했다가, 세조 9(1464)년 가을 공관 후원에 있는 鎭南樓로 이안하였다. 성종초 세조와 예종의 실록이 완성되면서 梁誠之가 봉안사로 와서 按察司 金之慶과 더불어 전주부성의 남문 내에 태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慶基殿 동쪽 담 안에 터를 잡고, 전주부윤 趙瑾과 순창군수 金克鍊이 감독하여 성종 4(1473)년 5월에 완공하였다.<sup>38)</sup> 이 사고에 수장되었던 전주사고본 실록은 임진왜란의 발발로 선조의 行在所로 疏開되었으나 사고는 화를 입었다. 그러나 경기전은 수복되었으므로 사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33) 世宗實錄, 권85. 책4. p.221下右. 21년 6월 壬寅.

34) 世宗實錄, 권86. 책4. p.223下右. 21년 7월 己酉.

35) 世宗實錄, 권110. 책4. p.645下右. 27년 11월 庚寅.

36) 世宗實錄, 권149. 책5. p.625下左. 地理志.

37)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6表.

增補文獻備考, 권39. p.508下. 輿地考.

38)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장6裏-7表. 全州. 實錄閣.

성주사고는 성내 객관의 동북에 건립되었는데,<sup>39)</sup> 중종 33(1538)년에 불이 나서 전소되자 부득이 춘추관의 실록을 다시 필사하여 봉안하였다.<sup>40)</sup> 사각의 재건위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원위치에 재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의 병화를 만나 성주의 사각과 함께 실록도 전소되어 현재 그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어렵다.

임진왜란으로 전주사고본 실록만 재난을 면하자 이를 복인하였다. 왜란 후 국가 재정이 곤란하고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실록을 도성 내의 南別宮에 이봉하고 兵曹의 넓은 청사에서 선조 36(1603)년 7월부터 39(1606)년 3월까지 13대 실록 804권 259책을 간행하였다. 실록의 복인이 마무리될 즈음 이를 분장할 외사고의 적지를 모색하여 사각을 건립하였으니 이때 건립된 사고가 마니산사고, 오대산사고, 태백산사고, 묘향산사고였다.

경기도에는 처음에 강화도 摩尼山에 史閣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효종 4(1653)년 11월 마니산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실록 2권, 의례와 여러 책이 화를 입었다.<sup>41)</sup> 이 화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각이 건립되었으니 곧 鼎足山史庫이다. 정족산사고는 현종 원(1659)년 강화유수 柳滄이 전등사 경내에 건립하였다. 단층의 사각 건물은 선원각과 동을 달리하여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었다.<sup>42)</sup> 실록을 이 정족산사고로 이봉한 것은 현종 1(1660)년 12월 3일이었다.<sup>43)</sup>

강원도는 평창군에 있는 月精寺와 上院寺의 중간지점에 연꽃이 반쯤 핀 물, 불, 바람의 三災不入의 길지에 건립되었다. 오대산 사각은 남향의 목조 2층 기와집인데 2동이 앞뒤로 나란히 건립되었다. 사각의 부속건물로는 사고 동쪽에 別館과 靈鑑寺가 있었다. 별관은 목조의 단층 기와집이었고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숙사로 사용되었다.

39)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8, 장20裏.

40) 中宗實錄, 권93, 35년 4월 戊寅, 책18, p.382下右.

41) 孝宗實錄, 권11, 4년 11월 戊戌, 책35, p.656下右.

42) 京畿道地方古蹟調査寫眞集, 寫眞, [大正 5] 第2圖.

43) 摩尼山實錄을 鼎足山史閣으로 移奉한 것은 肅宗 4(1678)年이라고 생각해왔다. 허나 鼎足山으로 移奉했을 때의 形止案이 傳來되고 있음으로 顯宗 1(1660)年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숙종 4년 형지안의 명칭은 『康熙十七年戊午九月 日實錄奉安後形止案』이며 『顯宗實錄』 2권을 봉안한 후 작성한 것이다. 《中興篇,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韓國史料解說集, (서울, 韓國史學會, 1964) p.21》 『順治十七年庚子十二月初三日實錄移安新設史閣後形止案, 寫本, [顯宗 1]》

史庫寺라고도 불린 영감사는 월정사의 속사로 守護番僧이 머무는 작은 사찰이었다.

한편 경상도는 覺華寺 근방에 太白山史庫를 건립하였다. 28년 후 인조 12(1634)년 3월에 태백산 실록을 포쇄한 대교 兪棍은 사각이 높은 두 봉우리 사이에 있어 물이 통할 곳이 없어서 적당한 곳이 못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사각의 개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현재의 태백산사고지를 보아도 높은 두 봉우리 사이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고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 다른 사각에 비해 적당한 곳은 못되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각은 3간 2층의 건물로 선원각과 동을 달리하여 좌우로 나란히 건립되었다. 부속건물로는 曝曬廳과 守護番僧이 머무는 암자가 있었다.

북인실록을 봉안하기 위한 妙香山史閣 건립을 명령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미 사고지가 물색되었거나, 임진왜란 기간 중 실록을 소개했던 곳에 건립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안에 즈음하여 태백산, 오대산, 묘향산의 사각도 거의 완성되었다<sup>44)</sup>고 말하고 있음을 보아 39(1606)년 4월경 묘향산 사각도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묘향산사고의 실록은 결국 赤裳山으로 옮겨진다.

赤裳山史庫는 다른 사고보다 좀 늦게 광해군 6(1614)년에 건립되었다. 이는 後金(淸)과의 관계악화로 광해군 2(1610)년에 묘향산실록을 안전지대인 남방으로 이견하기 위한 조치로 적상산에 사고지를 물색하여 창건한 것이다. 적상산사각의 규모는 3간 2층이었으며 전후 퇴주까지 합쳐 9간이었다. 그외에도 포쇄청이 2간, 사각 동편 승사가 6간, 사각 서편에 신축된 승사는 15간이었다. 또한 사고를 관리하는 참봉이 거처하는 3간 건물이 부대되어<sup>45)</sup> 있어 도합 35간인 셈이다. 사각이 건립되자 광해군 11(1619)년 9월에 사책을 봉안하기 시작하였고, 인조 12(1634)년에 묘향산사고에서 태조 이후 명종까지의 실록과 『東國輿地勝覽』 등 27종의 서책<sup>46)</sup>을 이안함

44) 宣祖實錄, 권198. 39년 4월 丙寅. 책25. p.188下左.

45) 茂州縣編, 崇禎五年六月 日全羅道茂州縣赤裳山城條陳成冊. 寫本. [仁祖 10] 장2.

46) 崇禎六年癸酉二月十八日香山實錄奉審形止案. 寫本. [仁祖 11]

이때 奉安되어 있던 書冊은 皇華集 36卷, 周易諺解 1件, 東國兵鑑, 2冊, 輿地勝覽 25卷, 五禮儀 8卷, 左傳 14卷, 樂學軌範 3卷, 內訓 3卷, 朱子書節要 10卷, 孟子諺解 7卷, 中庸諺解 1卷, 小學諺解 4卷, 論語諺解 4卷, 龍飛御天歌 5卷, 辟瘟方 1卷, 東醫實鑑 25卷, 訓義綱目 76卷, 高麗史 85卷, 詩解 10卷, 攷事撮要 2卷, 訓蒙字會 1卷, 辟瘟方 1卷, 辟疫神方 1卷, 定陵碑文 1, 大典續錄併 5冊, 四聲通解 2冊, 東國新續三綱行實 1冊이다.

으로써 당시까지의 실록을 모두 갖추었다.

## 5.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外史庫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외사고를 건립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로서 보존도서관의 건립은 고려조의 전통이 조선에 계승되고 발전되어 훨씬 확대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사료는 비교적 많이 전래됨으로써 보존도서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초에 설치되고 말기까지 지속된 보존도서관으로 외사고와 수장된 실록의 관리에 대하여 보존, 보호, 복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 5.1 朝鮮實錄의 保存

#### 5.1.1 實錄의 奉安

문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성된 서적을 서고에 납입시켜야 한다. 실록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적이었으므로 서고에 납입시키는 것도 중요한 업무였다. 실록을 사고에 납입시키는 것을 봉안이라고 하였는데, 장엄한 의식에 따라 봉안되었다. 사고에 실록을 봉안하는 의식은 임진왜란 이후의 사정만 알 수 있다. 봉안에 앞서 반드시 사고를 개고할 일시를 추택하였다. 실록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封裹式을 한 후 奉安式을 거행하였다.

실록을 봉안하기 전에 실록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실록궤에 넣는 의식이 封裹式이다. 봉과하기 위해 總裁官 이하 堂上과 郎廳들은 모두 黑團領을 입고 나와 먼저 실록의 권질과 장황을 봉심한 후에 궤를 받들어 地衣 위에 놓는다. 이때 開卷할 수는 없었다. 이어 궤를 열고 川芎과 菖蒲 가루<sup>47)</sup> 부대 하나를 궤의 바닥에 넣고 楮注

47) 實錄을 싸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川芎과 菖蒲 가루는 防蟲과 防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藥材이다. 川芎과 菖蒲에는 芳香性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옷장에 넣어두어 좀을 豫防

紙 반장을 부대 위에 덮은 다음 紅鼎紬四幅袱를 저주지 위에 펼쳐놓는다. 보자기 위에 실록을 올려놓는데 먼저 부록부터 靑의 밑바닥에 넣고 首卷을 靑의 상부에 오도록 차례차례 넣는다. 이어 홍정주사폭보를 접고 그 위에 저주지 반장을 덮은 다음 천궁, 창포가루 부대 하나를 넣고 靑의 덮개를 단는다. 저주지로 자물쇠를 봉하고 “年月日臣 謹封”이라고 쓴다. 臣字 아래에는 總裁官이 着銜한다. 자물쇠의 열쇠에도 저주지로 줄을 만들어 두르고 “臣 謹封”이라 쓰고 臣字 아래에 총재관이 착함한 다음 자물쇠의 중간에 매달아 임시로 排案卓 위에 안치해둔다.<sup>48)</sup> 이렇게 봉과된 실록은 춘추관 사고와 외사고에 각각 봉안된다.

춘추관사고에 봉안할 때는 봉과가 끝난 어람용 부록을 넣은 靑과 실록을 넣은 靑를 각각 彩輦에 싣고 붉은 보자기로 덮어놓는다. 初草, 中草, 初見本, 再見本은 시령 위에 싣고 붉은 보자기로 덮고 붉은 끈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다. 봉안일이 되면 實錄纂修廳의 總裁官, 堂上, 都廳, 郎廳 및 春秋館 堂上은 흑단령을 입고, 실록청에 모여서 봉안의식을 위해 仁政殿 西序 즉 藝文館의 樓上庫에 있는 춘추관 사고로 향해 행진해간다. 준비가 다 되면 행진을 해서 춘추관 사고에 당도하는데 약대는 정렬시키지만 연주는 하지 않았다. 上馬臺 및 引路軍이 선두에서 인도하며 儀仗, 香亭, 樂隊의 순으로 행진하였다.

총재관 이하 모든 당상과 도청이 춘추관 동쪽 정원에 도달하면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사고에 肅拜할 때 贊儀가 ‘四拜’라고 외치면 총재관 이하 모두 네번 절하였다. 절이 끝나면 낭청이 忠贊尉의 도움을 받아 실록케를 춘추관의 대청 위에 임시로 안치한다. 총재관 이하 관원이 건물에 올라서면 춘추관 관원이 사고의 문을 열어 실록케를 봉안하였다. 이어 사고를 봉인한 다음 총재관 이하 물러났다.<sup>49)</sup> 이와 같은 절차로 실록을 춘추관사고에 봉안하였다.

춘추관 사고에 봉안하는 의식에는 실록청의 총재관, 도청의 당상, 낭청, 춘추관의 당상이 모두 나가서 봉안하는 것과는 달리 외사고에 봉안할 때는 봉안사와 종사관

하는데도 사용되었다.

48) 申炳周, 『朝鮮王朝實錄의 奉安의식과 관리체계』, 『한국사연구』 115호 (2001.12), p.77-81.

49) 實錄廳,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 高宗 2年 閏5月16日. 奉安式.

몇명만을 보냈다. 봉안사로는 대개 춘추관의 당상관 1명과 기사관 1명이 파견되는데 이때 한강가에서 宣醮과 賜樂 즉 酒樂을 하사하였다. 당상이 파견될 때는 왕이 주악을 하사하지만 기사관만이 파견되는 포쇄시에는 주악을 하사하지 않았다. 사고에 이르러 봉안사가 흑단령을 입고 사배하는 것은 춘추관에 봉안하는 것과 같다.

從事官으로는 奉安使와 함께 觀象監 官員이 파견되었고, 이외에도 書吏, 庫直, 營吏, 馬頭, 成助色, 禮房, 都色, 中房 등이 파견되었다.<sup>50)</sup> 실록봉안사가 가는 연도에는 그에 마땅한 의식이 있었다. 대개 전후 射隊 3哨, 輦을 호위하는 군사와 전후 射隊가 동원되었으며, 자기 경계에서 대기하고 있던 監司에게 宣傳官이 標信과 兵符로 알려주었다. 조선시대에 모두 634회 사고를 개고하였는데 봉안할 때 개고한 것은 120회였다.

### 5.1.2 史閣의 奉審과 守護

사각과 봉안된 실록이 의외의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봉심하고 수호해야 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읍성 내에 사고를 건립하고 지방관청에서 수호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기만 하다. 즉 충주사고를 수호하던 사람은 守護官 5명, 別色戶長, 記官과 庫直이 각 1명이었다.<sup>51)</sup> 이는 산중에 건립된 외사고에 실록을 봉안하던 고려의 제도와는 달리 읍성 안에 건립된 사고에 봉안했기 때문에 지방관아에서 수호했으며, 따라서 수호군사의 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와 성주사고도 읍성 내에 설치되었으므로 충주사고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은 비교적 많이 전래되고 있다. 임진왜란 후에는 무뢰배가 사각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험준한 산중에 건립하였으므로 사각과 실록의 수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엄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선조 39(1606)년 예조와 춘추관의 관원이 협의하여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였다.<sup>52)</sup>

50) 康熙五十年四月 日五臺山實錄曝曬形止案. 寫本. [肅宗 37] 卷末.

康熙五十二年九月 日五臺山實錄曝曬形止案. 寫本. [肅宗 39] 卷末.

51) 世宗實錄, 권149. 地理志. 책5. p.625下.

그 내용에 의하면 사각의 봉심은 參奉의 담당이었다. 행정적으로 사각을 관리하는 자는 參奉이었으며 이들은 사각이 있는 도에서 차출하였다.<sup>52)</sup> 강우량이 많거나 바람이 심하여 實錄閣에 비가 새어들어 막중한 사적의 손상이 염려될 경우 참봉은 사각을 봉심하고 보고하여야 했다. 사각에 이상이 있거나 비가 센 곳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춘추관은 사관을 파견하여 실록각을 봉심하고 수개하였다. 이때도 서적을 거풍하고 점검하였다. 사고마다 2명의 참봉이 교대로 수직하였는데 1년마다 교체되었다. 참봉에게는 예조에서 帖文을 보내었다. 참봉 2명의 봉급은 6斗의 太米였다. 또한 사고 인근에 사는 착실한 백성 4호를 택해 일체의 身役이나 雜役을 면제시켜 오로지 사고만 책임지고 수직하되 2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또한 사각의 수호는 實錄守護寺刹의 總攝과 僧軍의 담당이었다. 僧軍은 사고마다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예조에 보내는데, 예조에서는 수직자에게 帖文을 보내고 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總攝을 임명하고 수직을 통솔하게 하였다. 위의 규정을 어긴다면 각관의 수령들이 중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實錄守護總攝은 승직으로서 실록수호사찰의 주지가 담당하였다. 외방사고의 수호사찰은 月精寺가 五臺山史庫를, 安國寺가 赤裳山史庫를, 傳燈寺가 鼎足山史庫를, 覺華寺가 太白山史庫를 담당하였다. 이 중 전등사의 총섭이 최고책임자인 都總攝이었다.

複印實錄을 분장한 초기에는 京外史庫守直節目과 같이 엄격하게 시행했겠으나 시일의 경과로 차차 헤이해지게 되었다. 즉 사고에 소속된 승려, 역졸과 군사는 그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승군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다. 이에 인조 7(1629)년 월정사 승려 應元 등이 이의를 제기함으로 禮曹에서 完文을 보내 절목의 규정과 같이 지킬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또 지역에 따라서는 흉년으로 승도가 이산되고 사찰은 황폐되어, 사고는 막중하나 수직할 승도가 없게 되었다. 숙종 43(1717)년에 다시금 춘추관 당상이 회동하여 京外史

52) 宣祖實錄. 권198. 책25. p.188下左. 39년 4월 丙寅.

朝鮮寺刹史料. (서울, 韓國文化開發社, 1972) 책下. p.65-71. 史庫節目, 禮曹完文.

53) 增補文獻備考. 책下. p.584上左.

庫守直節目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선조 39(1606)년 史庫節目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조선말이 되자 이들 사목은 또다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사고에 소속된 승려, 역졸, 군사는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승군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고관리경비는 인근 읍에서 내는 조세로 충당하게 되었다. 참봉의 관료나 승려의 위전 지급이 사목대로 준용되지 않음은 국가재정의 궁핍과 문란에서 온 것이었다.

## 5.2 朝鮮實錄의 保護

조선중기까지 사고에 봉안된 실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세종 28(1446)년 춘추관과 사고의 문서를 科擧의 式年과 같이 정기적으로 포쇄하도록 정하고<sup>54)</sup> 3년마다 포쇄를 하였다. 정기적인 포쇄와 점검은 단순히 실록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거행하면서 점검한 것이다. 경중에서 지리적으로 먼 사고의 실록은 주로 정기적으로 포쇄하고 점검한 경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강화사고의 경우는 정기적인 점검보다 부정기적인 점검이 3배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어떤 목적을 수행했을 지라도 실록각의 문을 열 때는 항상 먼저 개고일시를 추택하였다.

부정기적으로 행한 점검은 실록의 奉安, 考出, 移安, 取來, 奉審, 染蠟, 改櫃, 改絲, 改裝, 騰出과 實錄閣의 修改를 할 때 포쇄하면서 시행되었다. 부정기적인 개고와 점검 가운데 가장 많이 시행된 것이 考出할 때이다. 고출은 대사를 수행함에 참고할 전례를 구하지 못했을 때 실록이나 사고에 수장된 서적에서 필요한 기사를 초록해 오도록 파견한 것을 말한다. 정족산사고의 실록이 가장 많이 고출되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강화도가 경중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정족산의 사책이 산일된 결과 형지안을 살펴 필요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는 포쇄, 봉안, 수개와 겸해서 태백산사고나 적상산사고에서도 고출하였다.

54) 世宗實錄. 권114. 책4. p.707下右. 28년 10월 壬寅.

고출 다음으로 많이 시행된 것은 실록의 편찬이 끝나 사고에 奉安할 때이다. 실록 이외에 어제, 어필과 관인본도 봉안하였다. 이안과 환안은 신설사고로 移奉할 경우, 난을 피해 다니다가 사고에 還安한 경우, 실록을 복인하고 환안한 경우, 화재나 중수를 위해 다른 곳에 옮겨놓았다가 다시 옮겨 놓는 경우였다. 정족산사고의 실록은 染蠟, 改櫃, 改絲, 改裝하면서 점검한 바도 있다. 또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臚出하면서 점검하고 포쇄를 하였다. 이외에 形止案을 살펴 필요한 서적이 수장되어 있을 때는 정무의 참고를 위해 경중으로 가져온 취래의 경우에도 점검하였다.

사각에 당도한 사관은 흑단령을 입고 실록각 앞에서 사배를 한 후 사고 출입문의 봉인을 확인한 후 개고하였다. 대체로 외방사고의 상층에는 列聖朝의 實錄, 御製와 誌狀이 봉안되었고, 하층에는 각 都監儀軌나 관인본이 수장되었다. 사각문을 연 후에는 서책계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연후에 櫃를 열었다. 포쇄할 때에는 僧軍이 실록각의 뜰로 들어내어서 포쇄를 하였다.<sup>55)</sup> 사고에 따라서는 曝曬廳에서 포쇄하였다. 사각 뜰에서 포쇄할 때는 차일을 쳐서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습기를 말렸다.

포쇄와 점검이 끝나면 다시 櫃에 서적, 방충과 방습용의 물품을 넣고 사각에 봉안하였다. 서책을 櫃에 넣을 때는 책과 책 사이에 草注紙를 2장씩 넣고, 川芎과 菖蒲末도 넣은 후 붉은 보자기나 세모시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기름종이인 油菴을 덮었다. 외3사고의 실록을 포쇄할 때 소요되는 物種은 당해 도에서 마련하였다.<sup>56)</sup> 또한 사각 문밖에서 도장을 찍어 봉하고 ‘某日印封’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사관이외는 개고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蟲害와 腐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사고의 실록을 포쇄하기 위하여 사관을 파견할 때는 주로 翰林 즉 禮文館 관원으로서 春秋館 記事官을 겸임한 자를 보냈다. 한림 외에 別兼春秋는 파견되었지만, 지방관인 外春秋는 사고를 개고할 수 없었다. 한편 사고에 비가 샌 곳이 있어도 외춘추는 사각의 출입문을 열고 수리할 수 없었다. 반드시 참봉의 보고를 받은 수령이 도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가 중앙에 보고하면 사관이 와서 수개하였다. 이

55) 洪敬謨, 冠巖游史. 寫本. [高宗時] 장31表. 石室抽書記.

56) 戶曹. 度支定例. (改鑄甲寅字本) [英祖 27] 凡例와 권7. 藝文館 : 春秋館附. 장8-10.

와 같이 엄격하게 관리한 것은 지방수령이 사고를 개폐할 경우 사고를 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sup>57)</sup>

조선시대에 모두 634회 사고를 개고하였는데 포쇄 267회, 고출 161회 순으로 많이 개고되었다. 외사고에 파견된 사관은 주목적을 수행한 후 실록과 수장 문헌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당해 사고의 『實錄曝曬形止案』을 작성하였다. 형지안은 실록을 봉안할 때 이외에도 포쇄, 봉심, 이안, 취래, 고출 및 실록각의 수개시에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해서 작성한 보고용의 목록인데, 현대적인 의미로는 史庫藏書實態調查報告書이다.

실록을 봉안할 때의 형지안에는 포쇄, 고출, 봉심시에 작성한 다른 형지안과는 달리 봉안되는 실록의 서명, 권수, 책수, 실록찬수관원의 관직명, 성명, 수결 등이 기록되고 관인이 날인된다. 봉안형지안은 1건만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건을 작성하였다.<sup>58)</sup> 이는 봉안할 때에 형지안을 5건 필사하여 5사고에 실록과 함께 분장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봉안 이외의 목적으로 점검했을 때에는 사고마다 적어도 2건을 작성해서 1건은 당해사고에 보관하고 1건은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전래되는 형지안은 전주사고 2책, 해주 사고 1책, 향산사고 12책, 오대산 102책, 적상산 104책, 강화사고 142회, 태백산 99책, 도합 462책으로 강화사고의 형지안이 가장 많이 전래되고 있다. 형지안의 내용은 實錄秩, 書冊秩, 儀軌秩, 形止案秩과 卷末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록질에는 서명, 권수, 책수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정족산사고의 형지안에는 실록의 낙권, 낙장, 염랍, 재필사, 개장, 개사 등도 기록되어 있다. 서책질에는 서명, 책수, 권수, 봉안년월일, 상송년월일, 낙권여부, 결본이 기록되어 있다. 서책질에 수록된 서책은 대개 관인본이다. 서적마다 봉안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간행년도를 알 수 없는 관인본은 이를 통해 간행년도를 추정할 수 있다.<sup>59)</sup> 의궤질과 형지안질에도 봉안년월일이 기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포쇄년월, 봉

57) 中宗實錄. 권29. 책15. p.317上左. 12년 8월 壬戌.

58) 實錄廳.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寫本. [孝宗 8] 장22裏.

實錄廳.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寫本. [顯宗 2] 장19表.

59) 裴賢淑, 江華府史庫 收藏本考. 奎章閣 3 (1979) p.85-107.

裴賢淑, 五臺山史庫와 收藏書籍에 대하여. 書誌學研究 創刊號 (1986) p.59-104.

명관의 직명, 성명과 수결이 있고, 장마다 봉명관의 품계에 따라 [某品奉使之印] 또는 [奉使之印]이란 관인이 날인되어 있기도 하다.

### 5.3 朝鮮實錄의 復元

#### 5.3.1 實錄의 復元

임진왜란으로 다른 실록은 소실되고 유일하게 전주사고본만이 재난을 면하게 되자 그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하였다가 환도하자 선조 27(1594)년 9월부터 실록의 부분필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선조 28(1595)년 11월, 선조 30(1597)년 4월, 선조 34(1601)년 정월 등 여러 차례 필사해서 복본을 제작하려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다가 실록은 대개 활자를 사용하여 인출하였으므로, 평시와 같지는 않으나 校書館 수장의 鑄字와 新舊活字를 서로 보충해서 사용하면 5년 이내에 3권을 인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2년에 1권을 겨우 필사하기 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선조도 권질이 적지않은 책역을 선불리 문관이 필사하다가 성사할 수 없을 것이고, 하물며 1권에 머물지 않으니 강화에 설국하여 인출하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sup>60)</sup>

선조 36(1603)년 5월 춘추관에서는 다시 상의하여 실록은 강화에 봉안해두고 그 권수를 헤아려 순차적으로 경중으로 가져와서 인출하고, 인쇄가 완성된 후 강화로 환장할 것을 정하였다. 이에 설국장소는 경중 南別宮이 가장 적당하지만, 중국사신이 그 사이에 도래할 것이므로 강화에서 가져온 실록은 잠시 남별궁의 정실에 임시로 안치하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兵曹의 관창을 인출처로 정하였다.<sup>61)</sup> 이로서 실록을 묘향산에서 강화로 이봉하고 순차적으로 간행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실록복원에 필요한 장소, 용지, 활자들을 모두 구비하여 작업을 시작했으니 곧 선조 36(1603)

60) 宣祖實錄. 권162. 책24. p.479上左. 36년 5월 辛未.

61) 宣祖實錄. 권162. 책24. p.480下左. 36년 5월 甲戌.

년 7월이었다.<sup>62)</sup>

부분실록을 인출하기 시작하여 2년이 지나자 상당히 진척되었다. 이에 선조 38(1605)년부터 실록을 봉안할 사각을 마련하여 강화사각은 수리가 시작되었고, 태백산, 오대산, 묘향산사각도 적지를 물색하여 건립되고 있었다. 선조 39(1606)년 4월이 되자 신인실록이 완성되어 구분은 576책인데 비해, 신인본은 4, 5권을 1책으로 묶거나 2, 3권을 1책으로 묶었으므로 259책이었고, 신구본 5권을 합하니 1,500책이 넘었다.

이외 부분적으로 복원한 경우도 있었다. 인조년간 李适의 난과 丙子胡亂으로 춘추관사고본과 강화사고본의 실록이 크게 산일되어 두 사고본을 합쳐도 완질이 되지 않았다. 즉 인조 22(1644)년 8월의 보고에 마니산사고본과 춘추관사고본은 난으로 340권이 산일되어 사관을 보내 두 질을 거풍하고 산일된 권책을 필사하여 보충하도록 하였다.<sup>63)</sup> 이에 봉고 沈世鼎이 강화에 파견되어 수보할 권수를 점검한 후 돌아와서 列聖實錄 1,025권 내에 落卷 148권과 落張 167권이 있으며, 『光海君日記』도 낙권이 65권, 낙장이 2권인데 『光海君日記』의 신유(1621)년 8월 이후는 전무하여 권수를 알 수 없다<sup>64)</sup>고 하였다. 신유년 8월 이후의 권수를 계산하니 19권이 된다. 따라서 계산상 『光海君日記』의 낙권은 84권이지만 권169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실제의 낙권은 83권이었다.<sup>65)</sup>

그러나 강화사고의 실록은 이때 수보되지 못했고 현종 6(1665)년에야 수보되었다. 이는 현종 5년 11월에 강화도에 수장된 열성실록에 낙권이 있어서 완질이 아니므로 보결해야 한다고 사관 李選이 보고하면서 비롯되었다. 강화실록의 수보는 이미 인조년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흉년이 겹쳐 거행하지 못했던 바 이때 현종은 명

62) 李廷龜. 月沙集. 影印本. (서울, 景文社, 1982) 권 39. 實錄印出廳題名錄序.

63) 仁祖實錄. 권45. 22년 8월 辛酉. 책35. p.191上左.

64) 仁祖實錄. 권45. 책35. p.193上左. 22년 8월 壬午.

65) 光海君 辛酉 8월 以後는 全無라고 했는데 이중 辛酉 9월분 권169는 顯宗 6년에 修補되었다. <康熙五年三月十八日赤裳實錄謄出奉安後形止案. 寫本. [顯宗 7]> 무슨 緣故인지 권170-187까지의 18권은 修補되지 않았다가 肅宗 4년에 修補되었다. <康熙十七年九月日實錄奉安後形止案. 寫本. [肅宗 4] 張28-29.> 그러나 이때 권169는 疊書라고 注記하고 있음을 보아 點檢에 錯誤가 생겨 修補되고 複本이 된 것이다. 따라서 『光海君日記』의 落卷은 83권이었다.

년(6년) 정월에 적상산에서 실록을 가져와서 필사할 것을 명하였다.<sup>66)</sup>

그러나 다음해 기록은 생략되었으나 다시 논의된 듯 적상산 실록을 경중으로 가져와서 필사한 것은 아니었다. 적상산 현지에서 동지춘추관사 李尙眞과 행대교 崔後尙이 파견되어 동 6년 校勘하고 필사하여 동 7년 정월에 강화사고에 봉안하였다. 파견된 행대교 최후상이 적상사고 옆 안국사에서 개국하여 2개월간 호남과 영남의 3도 유생 300명을 모아 讎校하고, 三道 邑에서 宰郵官 31명을 선발하여 필사한 것이다.<sup>67)</sup> 이때 태조부터 광해군까지의 낙권낙장 280권 1,389장이 합쳐짐으로써 강화도의 실록은 정비되었다.

이상진, 최후상 등이 교감한 바에 의해서도 태백산본과 동일한 적상산본에는 문자의 倒置, 誤字, 脫字, 疊字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수교한 내용이 곧 정족산본의 紙頭와 紙脚에 ‘權原本恐倒’, ‘加原本恐誤’, ‘于原本恐脫’, ‘巡原本疊’, ‘之掌之之元本恐誤’, ‘下依字元本恐誤’, ‘名之下元本恐脫’, ‘之新下元本缺’, ‘今今原本疊’ 등등으로 필사한 작은 종이를 첨부한 것이다.<sup>68)</sup>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곧 적상산본을 말한다. 현종 6년 280권을 수보하는데 유생 330여명이 동원되어 2개월간 필사하였으니 이 역사도 작은 일은 아니었다.

### 5.3.2 實錄의 修補

전래하는 정족산본실록 1,187책은 표지를 주안점으로 구분하면 『宣祖實錄』을 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宣祖實錄』 이전의 실록은 정족산사고본만이 원본이고, 다른 사고의 실록은 복인본인데 비해 『宣祖實錄』 이후의 실록은 모두 원본실록이다. 정족산 수장의 『明宗實錄』까지의 구 전주사고본의 원표지는 紺色絹이다. 이 검색견표지의 실록은 임진왜란의 병란에도 멸실되지 않고 전래된 원본실록인데, 또 병자

66) 顯宗實錄. 5년 11월 庚戌. 권9. 책36. p.440下左.

承政院日記. 顯宗 5년 11월 庚戌. 서울 : 國史編纂委員會, 4294. 책10. p.274上左.

67) 趙秉瑜. 赤城誌. 寫本. [高宗 35] 권5. 장8. 赤裳山城實錄謄校同苦錄記序.

68)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大邱: 泰一社, 2002), p.388-390.

호란과 이괄의 난을 겪었으므로 표지가 탈락되기도 하고, 綴絲가 끊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수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 전주사고본이다.

손상된 정족산본은 진후 4차 수보되었다. 1차는 병자호란 후 정족산본이 산일되자 이괄의 난 후 정족산사고에 이봉해두었던 복인본인 춘추관사고잔본으로 보충한 때이다. 2차는 효종 8(1657)년 『宣祖實錄』 14책만을 수보한 때이다. 이는 효종 4(1653)년 11월의 화재로 인해<sup>69)</sup> 화상을 입은 실록을 수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sup>70)</sup> 실록으로서는 극소형이다. 3차는 현종 6(1665)년에 대대적으로 수보한 때이다. 현종 5(1664)년 11월 행검열 李選이 포쇄하고 새로 제작한 실록케에 바꾸어 넣고 돌아와서 열성 실록이 완질이 되지 못하므로 수보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sup>71)</sup> 현종 6(1665)년에 필사하여 현종 7(1666)년 1월에 강화사고에 봉안하였다.<sup>72)</sup> 4차는 현종 7(1666)년 포쇄하면서 낙권이 있음을 발견하고 숙종 4(1678)년에 수보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장된 표지의 실록이 많은데, 개장된 경우에는 예외없이 황색의 紙表紙이다.

『宣祖實錄』까지의 전주사고본은 紺色絹 표지에 白色絹 題簽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제침의 서명은 목판으로 인쇄하고 권차는 책마다 다르므로 필사하였다. 개장이나 수보된 책은 감견으로 개장하지 않고 모두 황지로 개장하였다. 이를 보면 예종, 연산군, 인종의 실록의 원표지는 한 책도 없다. 현종 5(1664)년 형지안에 개장된 기록이 있으므로<sup>73)</sup> 이들 실록도 원래는 역시 감색견으로 장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화사고본이 완전히 손상되거나 산일되어 춘추관사고본 잔부나 필사하여 보충한 수보본은 180책이다. 정족산사고본일지라도 『宣祖修正實錄』 이후는 황지로 장황했고 『光海君日記』를 제외하고는 개장되지 않았다. 황지표지인 경우는 菱花紋이 다양하다.

개장된 실록의 경우 개장에 관한 기록도 없이 개장된 경우도 있으나, 그 기록을

69) 孝宗實錄. 권11. 책35. p.656下右. 4년 11월 戊戌.

70) 順治十一年十月 日實錄奉安後形止案. 寫本. [孝宗 5] 實錄秩.

이 形止案에서는 화상을 입은 實錄名 아래에 '火災'라고 注記되어 있다.

71) 顯宗實錄. 권9. 책36. p.440下左. 5년 11월 庚戌.

72) 顯宗實錄. 권11. 책36. p.495上右. 7년 1월 庚寅.

73) 康熙三年九月初四日實錄曝曬及改裝時形止案. 寫本. [顯宗 5] 實錄秩.

남긴 때는 『宣祖實錄』을 수정한 효종 8(1657)년과 현종 5(1664)년 가을이다. 효종 8(1657)년에는 강화에서 가져온 『宣祖實錄』 53책 중에서 파손된 실록 25책의 綴絲를 바꾸고 28책은 개장했다.<sup>74)</sup> 현종 5(1664)년에 개사하고 작성한 형지안에는 개장된 153책 실록명 아래에 ‘甲辰秋黃衣改裝’ 또는 ‘甲辰冬改絲’이란 주기가 있다.<sup>75)</sup> 개장된 438책 중 현종 5(1664)년에 개장했다는 기록이 있는 책은 371책이다. 이로서 이후 개장된 책도 상당히 많아 67책이 됨을 알 수 있다.

현종 5(1664)년 이후에도 철사가 끊어지면 수시로 개사했으나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개사의 시기를 알 수 없다. 전후 4차에 걸쳐 전체 1,187책 가운데 375책이 수보되었으니 약 1/3이 수보된 셈이다.<sup>76)</sup> 그만큼 임진왜란,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으로 입은 손상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춘추관잔본으로 보충한 책, 효종년간과 숙종년간에 수보된 책은 모두 전권이 망실되거나 소실된 것이며, 현종년간 수보본에는 전권수보본도 있고 부분수보본도 있다. 수보본 375책 가운데 전권수보본은 177책, 부분수보본은 198책으로 부분수보본이 더 많다.

병자호란 후 인조 22(1644)년 봉교 沈世鼎이 『光海君日記』 중에는 낙권이 65권, 낙장이 2권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 중 광해군 14(1622)년 8월 이후는 모두 낙권인데 그 권수의 다소는 알 수 없다고 상주한 바 있다.<sup>77)</sup> 실제로 수보했을 때의 형지안에는 수보본임이 주기되어 있다. 즉 현종 7(1666)년에 보고한 형지안에 의하면 권 6, 7 아래에 ‘六七卷落張新贍’으로 주기되어 있고 권13/16 이하 75책 아래에는 ‘落卷新贍’으로 주기되어 있다.<sup>78)</sup> 이로서 현종 6(1665)년에 필사하여 현종 7(1666)년 정월에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도 권170-187의 3책은 주의부족으로 낙권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숙종년간에야 발견되었고 이때에야 수보될 수 있었다. 현종년간 수보된 책 가운데 『光海君日記』는 실물로는 수보본임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우

74) 實錄廳.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寫本. [孝宗 8] 장22表.

75) 康熙三年九月初四日實錄曝曬及改裝時形止案. 寫本. [顯宗 5] 實錄秩.

康熙三年十二月日 實錄改絲時形止案. 寫本. [顯宗 5] 實錄秩.

76)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p.234.

77) 仁祖實錄. 권45. 책35. p.193上左. 22년 8월 壬午.

78) 康熙五年三月十八日赤裳實錄贍出奉安後形止案. 장37-39裏.

나, 형지안을 통해 14책이 전권수보본이며 2책이 부분수보본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실록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으니 곧 染蠟한 것을 들 수 있다. ̑̑̑̑된 실록은 대개 수보본을 제외한 순수한 구전주사고본이다. ̑̑̑̑된 책을 살펴보면 위의 <표 1>과 같다.

<표 1> 染蠟된 鼎足山本 實錄

實錄名	冊數	實錄名	冊數	實錄名	冊數
太祖	8	端宗	13	中宗	73
定宗	3	世祖	31	仁宗	2
太宗	27	睿宗	2	明宗	31
世宗	129	成宗	108		
文宗	12	燕山君	34	計	473

강화사고본 가운데 구 전주사고본을 ̑̑̑̑하면서도 수보된 후대의 필사수보본과 선조 이후의 실록은 ̑̑̑̑하지 않았다. 부분적인 낙장이 있어 수보된 실록인 경우도 동일본 내 임진왜란 전 인출된 책장은 ̑̑̑̑되었으나, 수보된 책장은 ̑̑̑̑되지 않았다. 같은 실록일지라도 이렇듯 구 전주사고본을 한층 더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하고 수보한 시기는 숙종 25(1699)년 3월과 4월이었다.<sup>79)</sup> 그러나 숙종 25(1699)년 형지안은 ̑̑̑̑ 및 수보형지안이지만 ̑̑̑̑된 실록에 대한 주기는 전혀 없다. 다만 현종년간 수보본에는 ‘落卷新謄’, 선조년간 복인본에는 ‘樣小’, 문종 권11에는 ‘赤裳亦落’, 複本, 춘추관잔본을 이장하여 복본이 된 실록에는 ‘蠟書’가 주기되어 있을 뿐이다. 숙종 25(1699)년 형지안의 서명이 ̑̑̑̑ 및 수보시의 형지안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므로 ̑̑̑̑ 외에 개장하고 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실록각을 수개한 때인 숙종 27(1701)년 형지안에 蠟謄, 蠟印, 新謄 등의 주기가 있다.<sup>80)</sup> 이로서 숙종 25(1699)년에 ̑̑̑̑된 실록의 추적이 가능하다.

79) 康熙三十八年三月 日實錄染蠟及修補時形止案. 寫本. [肅宗 25] 實錄秩.  
 80) 康熙四十年辛巳十月 日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寫本. [肅宗 27] 實錄秩.

임진왜란 전의 4사고본들이 모두 동일하게 감색표지였는지 아니면 사고마다 재료와 색상이 상이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임진왜란 이후 복인된 실록과 그 계승본 가운데 완질이 전래되는 실록은 태백산본 실록이다. 태백산본 실록은 태조부터 선조까지 雷紋繫地蓮寶相花紋이 있는 紺紙表紙이다. 이는 구 전주사고본과 같게 제작하려고 시도했으나 전후 물자가 궁핍한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259책이나 되는 4질(기록상으로는 1,500여권<sup>81)</sup>의 표지를 일시에 만들 건이 필요하였으니 아마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이로 대체시키고 다만 종이색만 동일한 감색으로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세 사고본도 동일한 능화문의 표지이지만 종이색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태백산본은 간행된 후 많은 시일이 경과되지 않았고, 도성과 원거리여서 이괄의 난과 병자호란의 화도 입지 않았으므로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사각에 우루처가 있어서 누습된 경우는 있으나, 개장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개장도 거의 없다. 태백산본은 봉안된 후 관리가 비교적 잘 되었고, 심산에 장치되었기 때문에 전란의 피해도 없어 개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족산본에 통합된 잔본 춘추관본은 雷紋繫地蓮寶相花紋이 있는 황색표지이다. 오대산본도 동일한 능화문이 있는 담황색표지인데, 襟接紙만은 일차 사용했던 廢棄紙를 재활용한 것이다.<sup>82)</sup> 오대산본은 校正刷였으므로 정본과는 달리 장황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복인본의 능화문은 외사고 모두 동일한 표지의 능화문이나 표지의 색상만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태백산본은 감색표지인데 비해, 춘추관본은 황색표지, 오대산본은 淡黃色薄表紙이지만, 적상산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宣祖修正實錄』부터는 정족산본이나 태백산본을 막론하고 능화문이 있는 황지표지로 바뀌게 된다. 종이 표지로 바뀌게 됨은 당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나, 왕실의 권위가 그만큼 격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황지표지를 사용하면서부터 능화문은 수시로 변화되었다. 이들 선조 이후의 실록은 오대산본, 적상산본의 형지안을 통해서나 실물을 통해서도 수보를 확인할 수

81) 宣祖實錄. 권198. 책25. p.188下左. 39년 4월 丙寅.

82) 裴賢淑. 五臺山史庫와 收藏書籍에 대하여. p.87-89.

없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대표적인 보존도서관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화재, 전란, 약탈을 통해서도 오늘날까지 실록은 전승될 수 있었으니 이는 모두 우리 조상들 지혜의 소산이었다고 하겠다.

## 6. 結 言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보존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보존을 ‘보존’, ‘보호’, ‘복원’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자료보존활동의 시원과 그 발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의 保存活動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의 서적 保存活動은 조선에 계승된 바 조선시대 서적의 보존활동은 실록의 보존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후에는 사각을 험준한 산중에 건립하였으므로 사각과 실록의 수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실록의 보존활동으로는 실록을 봉안하고 관리할 機構와 館員을 두고, 關係規定을 마련한 것이다. 선조 39(1606)년에 처음으로 예조와 춘추관의 관원이 협의하여 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였고, 인조 7(1629)년과 숙종 43(1717)년에 확인한 바 있다. 절목에 의하면 사각을 관리하는 자로 參奉을 두고 실록각에 이상을 봉심해서 춘추관에 보고하게 했다. 이 보고를 받은 춘추관은 사관을 파견하여 실록각을 봉심하고 수개하였다. 사각의 수호는 실록수호사찰의 총섭과 승군이 담당하게 하고, 이들의 급료를 위한 위전을 지급했다.

둘째, 실록의 保護活動은 실록을 사고에 봉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실록을 춘추관사고에 봉안하기 위해 封褰式과 奉安式을 장엄하게 거행하여 봉안하였고, 外史庫에는 간소하게 봉안하였다. 외사고의 실록을 포쇄하기 위하여 사관을 파견할 때는 주로 翰林 즉 예문관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자를 보냈다. 한림 외에 別兼春秋는 파견되었지만, 지방관인 外春秋는 사고를 개고할 수 없었다. 사고에 봉안된 실록의 방충과 방습을 위해 수시로 曝曬하였다. 외사고에 파견된 사관은 사

고에 수장되어 있는 실록과 서적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기록해서 實錄曝曬形止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셋째, 실록의 復原活動은 복원과 수보활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복원활동은 임진왜란으로 다른 실록은 소실되고 유일하게 전주사고본만이 재난을 면하게 되자 선조 36(1603)년부터 전체 실록을 複印하기 시작하여 39(1606)년 4월에 끝나 5사고에 분장한 것이다. 수보활동은 정족산사고본에만 시행되었다. 병자호란과 이괄의 난으로 소실된 실록은 필사해서 보완하였고, 손상된 실록은 改絲, 改裝, 染蠟하여 수보하였다. 효종 8(1657)년, 현종 5(1664)년과 숙종 25(1699)년 형지안에는 개사, 개장, 염랍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전체 1,187책 가운데 375책이 수보되고, 473책이 염랍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막중한 실록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해 보존, 보호와 복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실행해온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유전되었으므로 실록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參 考 文 獻>

- 강미희,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高麗史,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
- 방준필, 자료보존과정.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2.
- 裴賢淑,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4.3), pp.97-118.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大邱: 泰一社, 2002.
- 徐居正, 東文選. 木版本[中宗年間]
- 申炳周, 「朝鮮王朝實錄의 奉安의식과 관리체계」, 『한국사연구』 115호(2001.12), pp.75-105.

-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서울 : 東國文化社, 4291.
- 實錄廳, 宣祖大王實錄修正廳儀軌. 寫本. [孝宗 8]
- 實錄廳, 哲宗大王實錄廳儀軌. 寫本. [高宗 2]
- 實錄廳,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寫本. [顯宗 2]
- 藝文館 編, 翰苑故事. 寫本. [憲宗末]
- 趙秉瑜, 赤城誌. 寫本. [高宗 35]
-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문헌정보학과, 2003.
- 增補文獻備考. 影印本. 서울 : 東國文化社, 4292.
- 洪敬謨, 冠巖游史. 寫本. [高宗年間]
- Banks, Paul N., "Preservation of library material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3. N.Y. : Marcel Dekker, 1978.

K C I